성주군 마을회관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 ○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·재건축·증축·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 ○ 마을회관 신축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○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
 - 보조금의 지원기준(안 제6조) - 보조금의 지원제한(안 제7조)
 -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준수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 ○ 마을회관의 운영·관리 책임 명시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없음.
 나. 예산조치 : 540,000천원 정도
 다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.
 라. 규 제 심 사 : 해당없음.
 마. 입 법 예 고 : 2014. 11. 26. ~ 2014. 12. 15.(20일간)-의견제출 없음.

5. 검토의견
 ○ 본 제정 조례안은 마을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, 개축, 증축, 리모델링 또는 보수시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조건,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 ○『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』은 지역 주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인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건립,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, 자치입법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 감사합니다.